투데이 칼럼

고창 앞바다의 주인은 고창이다!

전 민 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구시포항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고창군과 위도 앞바다라고 말하는 부안군이 해상경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쟁점 해역을 두고 관할권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필자는 '쟁점해역 앞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고창이다' 라고 생각한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을 만지고서 전체 몸통의 생김새를 말할 수 없듯이 위도라는 섬만을 보고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몸통에 해당하는 고창군과 부안군 본토(本土)를 기준으로 지금의 문제를 냉철히 바라보아야 하며, 이때 쟁점해역이 고창의 앞바다라는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진다.

부안군은 아래 이유를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됐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정도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로 부안군의 주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안군은 짧은 역사 기간 동안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지배한 기간이 길고 그 당시 모든 인·허가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오늘날 일본 지배가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셀 수 없는 수많은 시간과 향후 영겁의 세월 동안 지속되어 갈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고창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500년과 50년 주장은 의미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해역은 원천적으로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도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볼 경우 부안군은 사방팔방으로 어업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고창군은 앞바다 정면에 장벽이 설치된 형국으로 해상자치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확대 해석하여 생각해 보면 부안군이 대한민국 모든 바다에 있는 섬에 대해 역사성과 묵시적 합의 관례가 있으니 관할권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해상 자치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과연 어느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겠는가?

셋째, 쟁점해역은 고창주민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고창 앞바다를 이용해 어로와 무역 등을 해왔다는 것을 각종 역사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다만 고창군은 서해안 융기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썰물 때 바다로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반면 부안군은 유리한 지형상 고창 해역을 자주 이용하였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다의 자치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구시포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제는 바다의 세상이 변하고 있다.

부안군도 고창 앞 바다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쟁점해역의 진정한 주인이 고창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창군청 기획팀의 선전과 함께 헌재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바다 역사의 진실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사 설

SOC 확충은 호남고속도로 확장부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짚어볼 것이 있다. 도내 도로들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도며 지방도며 두루 그렇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로인 호남고속도로가 가장 큰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절 때면 귀성 차량들이 병목 현상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병목 현상을 해결해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별 스럽다. 그 병목 현상이 지적된지 오래인데 말이다.

전북의 SOC 확충은 호남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시작돼 마땅하다. 호남고속도로가 명절 때마다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도는 느끼는 바가 잇어야 한다. 귀성객들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설치만으로는 귀성객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도내 모든 도로의 노후화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다. 저번에도 보도된 바 있거니와 도내 시설 개량 대상의 도로는 국도가 여덟 구간이고 지방도는 아홉 구간이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SOC 투자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일 게 아니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작업을 서둘러야겠다. SOC 확충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으로 입증돼 마땅하다. 삼례 IC에서 김제 JCT 구간이 상습 정체 구간이라서 '지옥구간' 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배전의 힘을 쏟아야 한다.

여태 호남고속도로가 예전 그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저번에 영호남 SOC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후속 움직임이 없으니 궁금하다.2030년까지 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과 항만 건설 등 113건의 사업을 위해 23조 9천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조심스럽게 지적할 것이 있다. 아쉬운 쪽은 우리 쪽이지 영남쪽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앞서서 나가야 한다. 전북도는 SOC 확충과 관련해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전북도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뛰어야겠다.

청년층 붙잡아둘 일자리 대책 절실

청년층을 붙잡아둘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젊은이의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지금 추석철이 다가오고 있다고해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 지역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률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 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저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4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엊그제 고용 쇼크를 우려하면서도 지적했거니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답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한두 번 나서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헌걸차게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독자제언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화되었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할 경우 3만원, 어린이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제50조 제4항)이 의무화 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제44조 제1항, 제2항)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34조의3)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할 때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11자 바퀴 모양에서 조향 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단축된다.(제87조 제1항)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였으며 미이수시 면허 취득 및 갱신이 불가하게 되었다.

곧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운행길이 되길 바란다.

신서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카우보이와 품격이 다른 독일 목동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에서 최근 소치는 목부들이 전통 옷차림을 하고 소들을 산에서 끌고내려오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 소떼들은 여름 동안 산중의 목초지에서 지낸 뒤 겨울을 나기 위해 늦여름에 계곡으로 내려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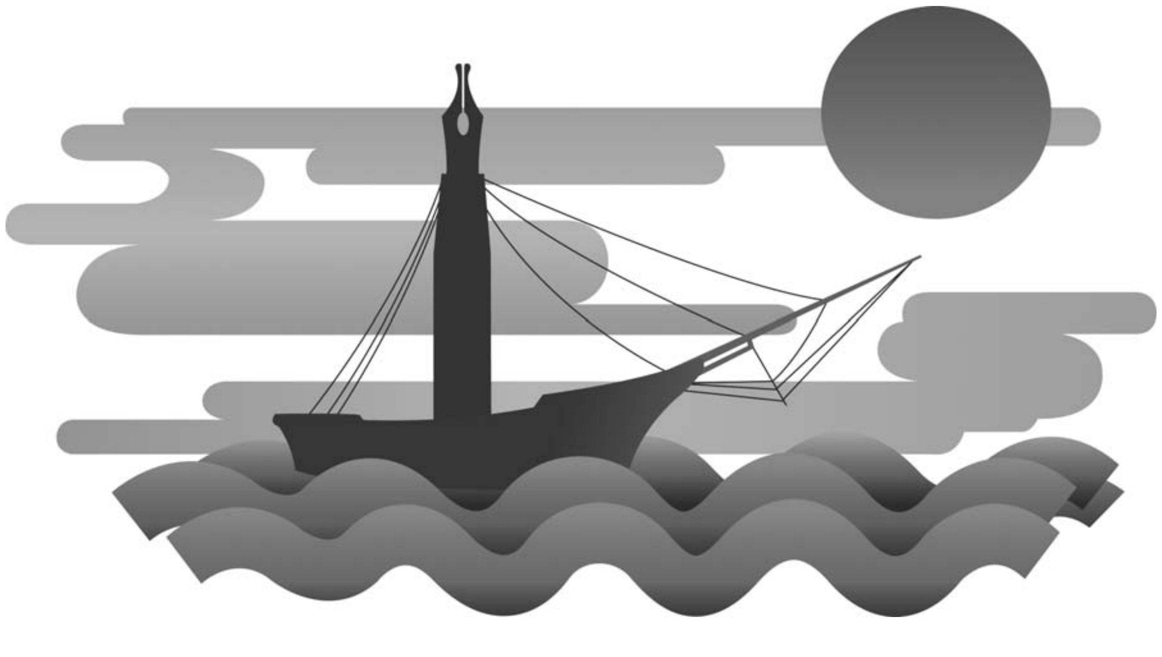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